

하도급계약에 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⑨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되어 변경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 여부?

Q 당초 계약액이 4,000만원 미만이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끊지 아니하였는데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변경계약시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A 하도급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추가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기성금을 현금수령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Q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기일이 3~4개월인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범위반여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의 현금결제비율유지 규정에 위반된다.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하도급법 제13조제3항), 어음의 만기일이 기성금 수령일 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3조제6항).

3. 기업구매카드로 하도급대금 결제

Q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전액 기업구매카드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경우 범위반 여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업구매전용카드(원사업자의 부도시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로 결제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법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과 제13조제4항의 현금결제비용 유지의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결제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위반 된다. 또한, 하도급법 제6조제2항과 제13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무한지식

‘30m 방수’ 시계의 정확한 의미는?

시계를 사러 가서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보면 ‘30m 방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제품설명서에도 그런 설명이 적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30m 방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일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수심 30m까지 들어가도 시계에 습기가 차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시계를 찬 채로 잠수를 했다가는 물에서 나온 뒤에 또다시 시계를 사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시계가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멈춰버릴지도 모르니까.

오해의 핵심은 30m 방수는 수심 30m에서 견딜 수 있고, 50m 방수는 수심 50m에서, 100m 방수는 수심 100m에서도 시계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계의 제품설명서에 붙어 있는 30m 방수, 50m 방수, 100m 방수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수심 30m, 50, 100m의 기압에서 시계에 습기가 차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그 정도 ‘수심’에서 견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기압’에서 견딘다는 이야기다. 수심 30m의 기압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압과 비슷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수심 30m 방수는 손을 씻거나 물건을 씻을 때 물이

몇 방울 튀는 정도로는 습기가 차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30m 방수 시계는 흔히 말하는 ‘생활 방수’ 수준이고, 최근에만 들어지는 대부분의 시계는 이 정도 습기는 너끈히 견딜 수 있다.

한편, 50m 방수 시계는 샤워를 하거나 얇은 곳에서 수영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50m 방수 시계를 차고 다이빙을 해선 곤란하다. 다이빙을 하게 도미끼나 순간적으로 기압이 상승해서 방수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심 몇십 미터 아래로 내려갈 때도 끄떡없으려면 시계가 최소한 100m 방수는 되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보다 높은 수치의 방수 시계를 찬다고 한다. 잠수 뿐 아니라 스카이다이빙이나 행글라이딩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이도의 묘기를 펼치는 레저 스포츠. 다른 말로 X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신세대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등장했다. 산악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암벽등반, 스노보딩 등이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로 손꼽힌다.)는 급변하는 기압에서 잘 견디는 특수 시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혹시 30m 방수라는 말을 오해하고 시계를 찬 채로 물에 뛰어 들려는 사람이 있다면, 뿌옇게 습기 찬 시계에 화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뜯어말려야 할 것이다.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